



대법원 2024. 6. 17. 선고 2020다291531 판결

[상호저축은행인 피고가 대출받은 회사들과 사업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사안에서, 위 합의는 피고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 있어 유효하고,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주식 보유한다 규정을 초과하여 회사 지분을 취득하였다더라도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]

1. 사안

소외 1, 2 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인 피고는 특수목적법인인 원고 회사 명의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되, 피고는 사업자금을 원고에게 대출하고 3자가 원고 회사의 지분 및 사업수익금을 1/3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합의(이하 '이 사건 합의')를 한 다음,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회사 지분 33.3%를 취득하였음.

사업 종료 후 유상감자 절차를 통해 피고가 보유한 원고 회사 지분이 소각되고 감자대금이 지급되자,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및 피고의 주식 취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, 피고에게 지급된 감자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음.

상호저축은행 관련 규정은 상호저축은행의 비상장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하고 있음.¹

2. 원심의 판단: 원고의 청구 기각

원심은, 이 사건 합의가 상호저축은행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'대출업무 및 금융거래 관련 업무'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목적 범위 내에 포함되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함. 또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식 보유한다 제한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더라도 피고의 원고 회사 지분 33.3% 취득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함.

3. 대법원의 판단: 상고 기각

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.

가. 관련 법리

(1) **회사의 권리능력은**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**법률과 회사의 정관상 목적에 의하여 제한**되나,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는 **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**됨.

(2) 법률행위가 이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효력에 관하여 명문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 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**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**를 검토하여 이를 정해야 함.

(3) 구 상호저축은행법과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**비상장회사 주식의 매입보유를 제한하는 주된 취지는 상호저축은행의 사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**함과 동시에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보장하고 **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자본 충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**임.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보유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,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그 행위의 **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**. 위 규정들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**단속규정으로 보아야 함**.

나. 구체적 판단

이 사건 합의가 피고의 목적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.

구 상호저축은행법상 주식 보유한도 제한 규정을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하여 피고의 원고 회사 주식 33.3% 지분 취득이 무효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.

4. 대상 판결의 의의

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됨을 명확히 함.

법률행위가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, 그 법규정이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과 동시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식 보유한도 제한 규정이 단속규정임을 명확히 하였음.

¹ 구 상호저축은행법(2010. 3. 22.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‘구 상호저축은행법’이라 한다) 제18조의2 제1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(2008. 10. 6.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-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‘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’이라 한다)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‘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’의 한도 내에서만 매입보유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.

관련구성원

이원

변호사

02-316-4406

wlee@shinkim.com

문희춘

변호사

02-316-4051

hcmoon@shinkim.com

김세종

변호사

02-316-4108

sejongkim@shinkim.com